

에듀테크

공부혁명 엠북(mbook.kr)

MEDICAL CARE & HEALTHY



2026/27

병원행정사 의료법규

- ☆ 법, 시행령, 시행규칙 종합 정리
- ☆ 최근 법령 개정 및 신설 내용 반영
- ☆ 4시간 43분 완성, 암기코드 제공
- ☆ PDF 전자책

도서명 : 병원행정사 의료법규

ISBN : 979-11-7393-318-9

발간일 : 2026-07-29

형식 : 전자책(PDF)

저자 : 김병연 교수

출판사 : 엠북

홈페이지 : <https://www.mbook.kr/>

이메일 : by4782@gmail.com

정가 : 20,000원



병원행정사 의료법규

[목차]

제1편 보건의료기본법(p3)

제2편 의료법(p24)

제3편 감염병예방법(p129)

제4편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(p203)

제5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(p211~226)

[비고](1편~3편의 경우)

회색 형광펜은 법조문 제목

노란색 형광펜은 암기코드 등

검은색은 법

보라색은 시행령(대통령령)

갈색은 총리령, 부령

초록색은 최근(1~2년내) 신설, 개정된 내용

붉은색은 시행 예정

(Copyright) 공부혁명 엠북(mbook.kr)

제1편 보건의료기본법

(이하 법)

[목차]

제1장 총칙

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

제3장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/시행

제4장 보건의료자원의 관리 등

제5장 보건의료의 제공과 이용

제6장 보건의료의 육성/발전 등

제7장 보건의료 통계/정보 관리

[약어]

- 지자체는 지방자치단체
- 국가등은 국가, 지자체
- 보건부는 보건복지부
- 장관은 보건부장관
- 위원회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
- 시도지사는 특별시장, 광역시장, 도지사, 특별자치도지사
- 시군구는 시장, 군수, 자치구의 구청장
- 발전계획은 보건의료발전계획

제1장 총칙

1~9조

1. 목적

-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/의무와 국가등의 책임 정함
- 보건의료 수요/공급 기본 사항 규정
- 보건의료 발전, 국민 보건/복지 증진에 이바지

2. 기본 이념

가) 보건의료를 통해

- 모든 국민이 인간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 추구
- 국민 개개인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 조성

나) 보건의료의 형평과 효율이 조화 되게 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

3. 정의

가. 보건의료

- 국민 건강을 보호/증진을 위해 국가, 지자체, 보건의료기관, 보건의료인 등이 하는 모든 활동

나. 보건의료서비스

- 국민 건강 보호/증진을 위해 보건의료인이 하는 모든 활동

다. 보건의료인

-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 따라 자격/면허 등을 취득하거나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 자

라. 보건의료기관

- 보건의료인이 공중이나 특정 다수인을 위해 보건의료서비스 하는 보건기관, 의료기관, 약국 등

마. 공공보건의료기관

- 국가등과 공공단체가 설립/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

바. 보건의료정보

- 보건의료 관련 지식이나 부호, 숫자, 문자, 음성, 음향,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

4. 국가등의 책임

- 국민건강 보호/증진을 위한 법적/제도적 장치 마련, 자원 확보 노력
- 모든 국민의 기본적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 노력
- 식품, 의약품, 의료기기, 화장품 등 건강 관련 물품, 건강 관련 활동에서 발생할 위해 방지, 국민건강 위해 요인으로부터 국민 건강 보호 시책 강구 노력
-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시 민간이 하는 보건의료 행정/재정 지원

5. 보건의료인의 책임

- 자신의 학식, 경험, 양심에 따라 환자에 양질의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노력
-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요구받으면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못함
-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시 보건의료서비스 받는 자를 다른 보건의료기관에 소개하고 보건의료 자료 제공 노력
- 국가등이 관리해야 할 질병에 걸렸거나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대상자 발견시 관계 기관에 신고/보고, 통지 등 조치

6. 환자 및 보건의료인의 권리 (27년 4월 29일 부터 보건의료인의 권리)

- 가) 모든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해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 받을 권리(27년 4월 29일 삭제)
- 나) 보건의료인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시 학식, 경험, 양심에 따라 환자 건강보호를 위해 적절한 보건의료기술과 치료재료 등 선택할 권리
- 예외) 법,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있는 때

7. 국가등은 **보건의료정책**과 관련 **사회보장정책**이 **연계**되게 함

8. **국민의 참여**

- 국가등은 권리/의무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보건의료정책 수립/시행시 이해관계인 등 국민 의견 수렴

9. **다른 법률과의 관계**

-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정/개정시 법에 부합되게 함

(Copyright) 공부혁명 엠북(mbook.kr)

제2장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

10~14조

1. **모든 국민의 건강권 등**

- 법, 다른 법률에 따라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해 국가의 보호 받을 권리
- 성별, 나이, 종교, 사회적 신분,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한 권리 침해받지 않음

2. **보건의료에 관한 알 권리**

: 모든 국민은 관계 법령에 따라

- 가) 국가등의 보건의료시책에 관한 내용 공개 청구
- 나) 보건의료인, 보건의료기관에 자신의 보건의료 관련 기록 등 열람, 사본 교부 요청
- 본인이 요청할 수 없으면 배우자, 직계존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이,
- 배우자, 직계존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거나 질병 등 직접 요청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있으면 본인이 지정하는 대리인이,

- 기록 열람 등 요청

3.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자기결정권

-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인으로부터 자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 방법,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, 장기이식 여부 등에 관해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동의 여부 결정

4. 비밀 보장

-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와 관련해 자신의 신체상, 건강상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 침해받지 않음

5.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의무

- 가) 모든 국민은
- 자신과 가족의 건강 보호/증진에 노력, 관계 법령에 따라 건강 보호/증진 비용 부담
 - 보건의료인의 정당한 보건의료서비스와 지도에 협조
- 나) 누구든지 건강에 위해한 정보 유포/광고, 건강에 위해한 기구/물품 판매/제공 등 타인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 있는 행위못함

(Copyright) 공부혁명 엠북(mbook.kr)

제3장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/시행

15~23조

1. 발전계획

가)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(이하 중앙기관장)과의 협의와 위원회 심의 거쳐

5년마다 수립

나) 내용

- 보건의료 발전 기본 목표, 추진 방향
- 주요 보건의료사업계획, 추진 방법
- 보건의료자원 조달, 관리 방안
- 지역별 병상 총량 관리 시책
- 보건의료 제공, 이용체계 등 보건의료 효율화 시책
- 중앙행정기관 간 보건의료 업무 종합/조정
- 노인/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 보건의료사업계획
- 보건의료 통계, 정보 관리 방안
- 보건의료 발전에 특히 필요한 사항

다) 국무회의 심의 거쳐 확정

2. 장관과 중앙기관장은 발전계획을 기초로 보건의료 **주요 시책 추진방안** 매년 **수립/시행**

3. 시도지사/시군구는 발전계획이 확정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지자체 실정을 감안해 **지역보건의료계획**(이하 **지역계획**) **수립/시행**

4. **계획 수립의 협조**

- 장관, 중앙기관장, 시도지사, 시군구는 발전계획, 주요 시책 추진방안, 지역계획의 수립/시행을 위해 관계 기관 등에 자료 등 협조 요청
- 요청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함

5. 장관은 매년 발전계획 주요 내용, 해당 연도 주요 시책 추진방안, 전년도 추진실적 확정 후 지체없이 **국회** 소관 상임위에 **보고**

6. 국가는 예산 범위내 지자체에 지역계획 시행 **비용** 전부/일부 **보조** 가능

7. **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**

가. 설치

- 보건의료 주요 시책 심의를 위해 장관 소속으로 둠

나. 구성

1) 위원장 1명 포함 25명내

- 공무원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
- 위원장은 장관

2) 위원은 다음 중 장관이 임명/위촉

a) 중앙행정기관 공무원

- 재정경제부, 교육부, 행안부, 고용부 차관
- 복수차관 있으면 해당 기관 장이 지정하는 차관
- 식품의약품안전처장

b) 보건의료 수요자 대표로서 노동자단체, 소비자/환자 관련 시민단체(비영리민간단체) 등 추천 자